

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
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송미애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,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○ 도지사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
○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○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13조)

○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○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설비, 교육·훈련, 홍보, 재정,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 ~ 제19조)

○ 사회적경제조직의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)

○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(안 제21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,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서,
 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를,
 -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,
 - 안 제5조부터 제13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14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15조부터 안제19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설비, 교육·훈련, 홍보, 재정,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21조에서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구성을,
 - 안 제23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26조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, 필요한 경비의 지원, 위원회설립 및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

등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,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